## 의안검토보고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

개정조례안
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5년 12월 일

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준 봉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1995년 12월 일

내무위원회 전문위원

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 검토보고

본 안건은 1995. 11. 1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. 11. 20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1. 제안이유

-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위치한 토지가 둔산택지개발사업 준공 으로 지번이 변경되었기
- 현행조례 제2조에 명시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치를 변경
  된 지번으로 표시코자 하는 것임.

#### 2. 주요골자

ㅇ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치, 지번정정 (안 제2조)

┌ 현행 : 갈마동 산 7번지

└ 개정 : 갈마동 820-1번지

#### 3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위치한 토지지번이 둔산 택지개발사업 준공으로 갈마동 산 7번지에서 갈마동 820-1번지로

변경되어 안 제2조에 명시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치를 변경된 지번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 동 조례를 개정,

각종 홍보물 및 안내책자 제작시에 변경된 지번을 사용하여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봄.